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13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7. 1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2026. 7. 1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6. 7. 29.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가. 개정이유

- 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중 고성군노인요양원이 2021. 3. 10.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신설(안 제2조, 안 별표)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4조

2)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15188(2026. 4. 3.)호]

4) 기 타

-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712호
· 예고기간: 2026. 3. 30.~2026. 4. 20.(21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불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불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가.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제2조 제목을 “종류별 명칭과 위치”에서 “명칭과 위치”로 변경하고, 노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여 운영이 종료된 「고성군노인요양원」을 삭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만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행 운영 현황에 맞는 정비로 판단됨.

나.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이 종료된 「고성군노인요양원」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정비하여 현행 운영 현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7. 29.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